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468
----------	------

2016년 12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6년 10월 31일
- 다. 회부일 : 2016년 11월 3일
- 라. 상정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정책관 김 용 복)

가. 제안 이유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 우리 시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위탁기간(3년)이 만료되어,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청소년담당관 적격자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특히, 청소년활동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시설, 단체,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협력을 통해 양질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법인의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역사성 그리고 축적된 우수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지속적 연계 및 안정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시설개요

- 시설명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 시설규모 : 연면적 252.72m²(지상1층, 1개동)
 -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일부 사용 중
- 준공일자 : 2006.7.1.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2017. 1. 1 ~ 2018.12.31)
- 위탁업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연구 및 조사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지원 및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관리
 - 청소년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포함)
 - 그 밖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 : 1,421,873천원('17년 예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라.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99. 4. 1.~2001.12.31.(2년9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2차 : 2002. 1. 1.~2003. 2.28.(1년2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3차 : 2003. 3. 1.~2006. 2.28.(3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4차 : 2006. 3. 1.~2009. 2.28.(3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5차 : 2009. 3. 1.~2011.12.31.(2년10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6차 : 2012. 1. 1.~2013.12.31.(2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7차 : 2014. 1. 1.~2016.12.31.(3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 활동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의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급변하는 청소년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재 위탁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 태 식)

- 본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활동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의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활동 지원역할을 수행하는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재계약하고자 관련 조례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음.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개요 >

- 시설명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52.72㎡ / 연면적 252.72㎡ (지상 1층, 1개동)
- 위탁기간 : 2년(2017. 1. 1. ~ 2018.12.31.)
- 주요사업 :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활동 정책연구조사,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제, 특성화 및 특별사업진행.
- 소요예산 : 1,421,873천원('17년 예산)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개원일자 : 1999.5.26.
- 수용인원 : 99명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시·도 단위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및 서울시 청소년 활동의 지역적 수요를 반영한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2항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주요사업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청소년봉사활동의 활성화 사업(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활동홍보사업 등)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청소년조사연구 등)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인증제 및 신고제 운영 지원
- 청소년활동을 위한 안전지원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청소년축제지원 등 대학생지도자 운영)
- 특성화 및 특별사업(놀토서울EXPO, 놀토버스 운영지원, 인권페스티벌, 청소년 희망총회, 어린이청소년 시민발언대 등)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개발 및 지원,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본 센터의 운영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과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 서울시의 직영은 신뢰성, 공익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과도한 조직팽창과 재정의 확대, 비효율성, 비전문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간위탁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경우,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을 통해 서울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효용성이 높다고 하겠음.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내역

- 1999. 4. 1 : 1차 위탁계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지명위탁계약)
- 2002. 1. 1 : 2차 위탁계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계약)
- 2003. 3. 1 : 3차 위탁계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계약)
- 2006. 3. 1 : 4차 위탁계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계약)
- 2009. 3. 1 : 5차 위탁협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위탁 공개모집)
- 2012. 1. 1 : 6차 위탁협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계약)
- 2014. 1. 1 : 7차 위탁협약 체결 (사)한국청소년연맹(재위탁 공개모집)

-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한국청소년연맹은 1999년부터 현재 까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동대문청소년 수련관, 중랑청소년수련관, 강동청소년 수련관, 근로복지관,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금천단기쉼터, 금천중장기쉼터 등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8개를 위탁받아 운영해 오고 있음.

연번	시설명	수탁기관	대표자	직원수	민간위탁금 (천원)
1	동대문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이상익	13	580,000
2	중랑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박충서	26	920,000
3	강동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이상규	13	500,000
4	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강정숙	14	851,873
5	근로복지관	(사)한국청소년연맹	원정현	20	600,000
6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사)한국청소년연맹	오선희	23	-
7	금천단기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이미자	8	823,048
8	금천중장기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이미자	2	288,370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종합성과평가에서는 정기 재물 조사 소홀, 시설운영규정 미흡, 사업계획 수립 내용 미흡, 공개채용 절차 미 준수 등이 지적된 바 있음.

※ 지난 10월에 있었던 시의회의 현장점검에서 보조금관리시스템 미활용, 클린카드 미사용, 예산집행 미흡, 운영관리규정 미흡 등이 지적되었으며,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는 동대문수련관은 2015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에서 수련관 중 소득기준 초과자 대상선정, 참가직원 출장여비 과다지급, 이용자부담비용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부적정, 강습료 상한액 기준 미준수, 성범죄 경력 미조회,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인사관리규정 부적정, 운영위원회 구성 부적정. 기능보강 사업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승인전 사용, 관리운영규정 미비. 세입 업무 부적정, 보조금 관리 법령 미준수, 예산관리업무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시립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수탁법인((사)한국청소년연맹) 현황

- 수탁자명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대표 : 한기호)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설립목적 : 청소년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우리의 일을 찾아 가꾸고 올바른 국가관과 윤리관을 갖추어 행복한 통일 대한민국, 평화로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미래 세대의 육성
- 설립연도 : 1981.3월
- 인력현황

소속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사회 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기타 자격	계
중앙연맹	4	7	2	2	-	6	21
지역연맹	15	36	7	5	-	43	106
수탁기관	25	67	19	22	6	97	236
육성재단	1	2	1	-	-	1	5
총 계	45	112	29	29	6	147	368

○ 또한 3년전 재위탁평가에서 수당지급 부적정, 국내외 여비 지급 부적정,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성과상여금 산정방식 부적정,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등이 지적되었으나 재수탁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금번 재계약관련 적격자심의위원회(청소년담당관 주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주관)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의 결과를 받고 있어, 집행부가 청소년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청소년담당관 주관)

- 일 시 : 2016. 9.21.(수)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위원 : 7명(시의원, 회계사, 청소년전문가 등)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적합(93.5점) / 특이사항 없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주관)

- 일 시 : 2016.10. 7.(금)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4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11명(시의원,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 심의내용 : 위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등
- 심의결과 : 적정 / 특이사항 없음

- 위탁법인의 과오가 재무, 인사, 회계에 집중되어 있고, 한번의 지적이 아닌 점검과 평가 그리고 감사 때마다 매번 똑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기 이전에 행정, 재정, 회계 등의 철저한 규정 준수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부당한 일들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68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 우리 시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위탁기간(3년)이 만료되어,
- 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 1차(청소년담당관 적격자심의위원회), 2차(조직담당관 민간위탁평가위원회)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 나. 특히, 청소년활동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시설, 단체,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협력을 통해 양질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법인의 청소년활동의 전문성과 역사성 그리고 축적된 우수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지속적 연계 및 안정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였기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 시설규모 : 연면적 252.72m²(지상1층, 1개동)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일부 사용 중
- 준공일자 : 2006.7.1.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년 (2017. 1. 1 ~ 2018.12.31)

○ 위탁업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책연구 및 조사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인증 지원 및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관리
- 청소년활동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포함)
- 그 밖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 : 1,421,873천원('17년 예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99. 4. 1.~2001.12.31.(2년9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2차 : 2002. 1. 1.~2003. 2.28.(1년2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3차 : 2003. 3. 1.~2006. 2.28.(3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4차 : 2006. 3. 1.~2009. 2.28.(3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5차 : 2009. 3. 1.~2011.12.31.(2년10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6차 : 2012. 1. 1.~2013.12.31.(2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 7차 : 2014. 1. 1.~2016.12.31.(3년,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중심 청소년 활동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의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급변하는 청소년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대한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재 위탁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작성자 : 청소년담당관 청소년권리팀 류수경 (☎2133-4137)